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2020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설명회

2020. 2.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JEONBUK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1 '19년도 추진사항

▶ 열린어린이집 유형 단일화, 재선정 열린어린이집 유효기간 확대, 신규/재선정 선정 기간 분산, 개방성(물리적환경) 기준 완화, 선정취소 및 선정제외 기준 완화, 재선정 및 정기점검 중복미 실시 등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추진

□ (선정) 총 195개소(전체 대비 15.1%, '19년 목표 280개소 대비 70% 수준)

* 년도별 선정현황 : ('17) 87개소 → ('18) 148개소 → ('19) 195개소

< 2019년 열린어린이집 현황('19.12.31.기준) >

시군명	전체 어린이집 수	비율	유형별 열린어린이집 선정 현황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1,288	15.1%	195	42	3	3	87	58	0	2
전주시	545	9.4%	51	10	-	1	18	21	-	1
군산시	206	16.5%	34	5	-	-	15	14	-	-
익산시	201	15.9%	32	8	1	-	15	7	-	1
정읍시	68	7.4%	5	4	-	-	1	-	-	-
남원시	58	20.7%	12	-	-	-	11	1	-	-
김제시	46	45.7%	21	2	1	-	11	7	-	-
완주군	73	24.7%	18	4	-	-	7	7	-	-
진안군	6	50.0%	3	2	-	1	-	-	-	-
무주군	9	22.2%	2	1	-	-	1	-	-	-
장수군	7	14.3%	1	-	1	-	-	-	-	-
임실군	10	10.0%	1	-	-	-	-	1	-	-
순창군	11	27.3%	3	2	-	1	-	-	-	-
고창군	25	16.0%	4	2	-	-	2	-	-	-
부안군	23	34.8%	8	2	-	-	6	-	-	-

□ (평가반영) 열린어린이집 선정실적을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반영(9월)

* 「열린어린이집 선정」 관련 2019년 지자체 평가기준[보건복지부]

관내 어린이집 개소수 중	평가척도		평정기준(점수)
	열린어린이집 선정 개소	부모모니터링 진행 개소	
	20% 이상 선정되고,	30% 이상 모니터링 진행	
	20% 이상 선정되고,	20% 이상 모니터링 진행	
	10% 이상 선정되고,	30% 이상 모니터링 진행	
	10% 이상 선정되고,	20% 이상 모니터링 진행	
	10% 미만 선정되고,	20% 미만 모니터링 진행	0점

II

'20년 주요 변경사항

1 열린어린이집 설치 확대

- ☐ (국공립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 신설·확충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장기임차, 매입 등)은 열린어린이집에 준용하는 설치·운영*을 권고
 - 각 지자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계획 수립·승인 신청시 열린어린이집 운영 내용을 사전 검토·반영 권고
-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열린어린이집 개방성 기준('19.12.) 기 배포
- ☐ (평가기준 개선) 2020년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9월)시 부모모니터링 진행 개소수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열린어린이집 적극 선정 지자체 우대

2 현장부담 완화

- ☐ (매뉴얼 마련) 선정업무 부담완화를 위해 최소의 자료로 평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한 매뉴얼 마련 제공
- * 어린이집 대상 과도한 심사서류 요구 지양
- ☐ (선정·정기점검 확인항목 간소화) 선정 시 확인서류 감축(23종→14종) 및 정기점검 시 「개방성」 배점(선정시 최대 30점)을 삭제하고, 상시 보육실 내부 확인가능 유무로 점검 같음

3 평정기간 개선 및 일부 기준 신설

- ☐ (평정기간 개선)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중 일부(부모만족도 조사 등)는 평정기간 내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평정기간을 1년으로 개선
 - (기존) 당해년 1~9월(9개월) → (개정) 전년도 10월~당해년 9월*(1년)
- * 재선정을 8월(9월)에 실시할 경우에도, 평정기간은 전년도 8월(9월)~당해년도 7월(8월) 적용하는 등 평정기간을 1년 반영할 것
- ☐ (설치·운영자 변경시 유지기준) 열린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시 선정권자(시·도 또는 시·군·구청장)는 열린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유지 가능

Ⅲ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1 선정대상

- ☐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참여·선정 가능

2 선정기준

구분	내용
선정 요건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등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이상)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⑤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 (세부 선정기준) 어린이집의 구조·운영(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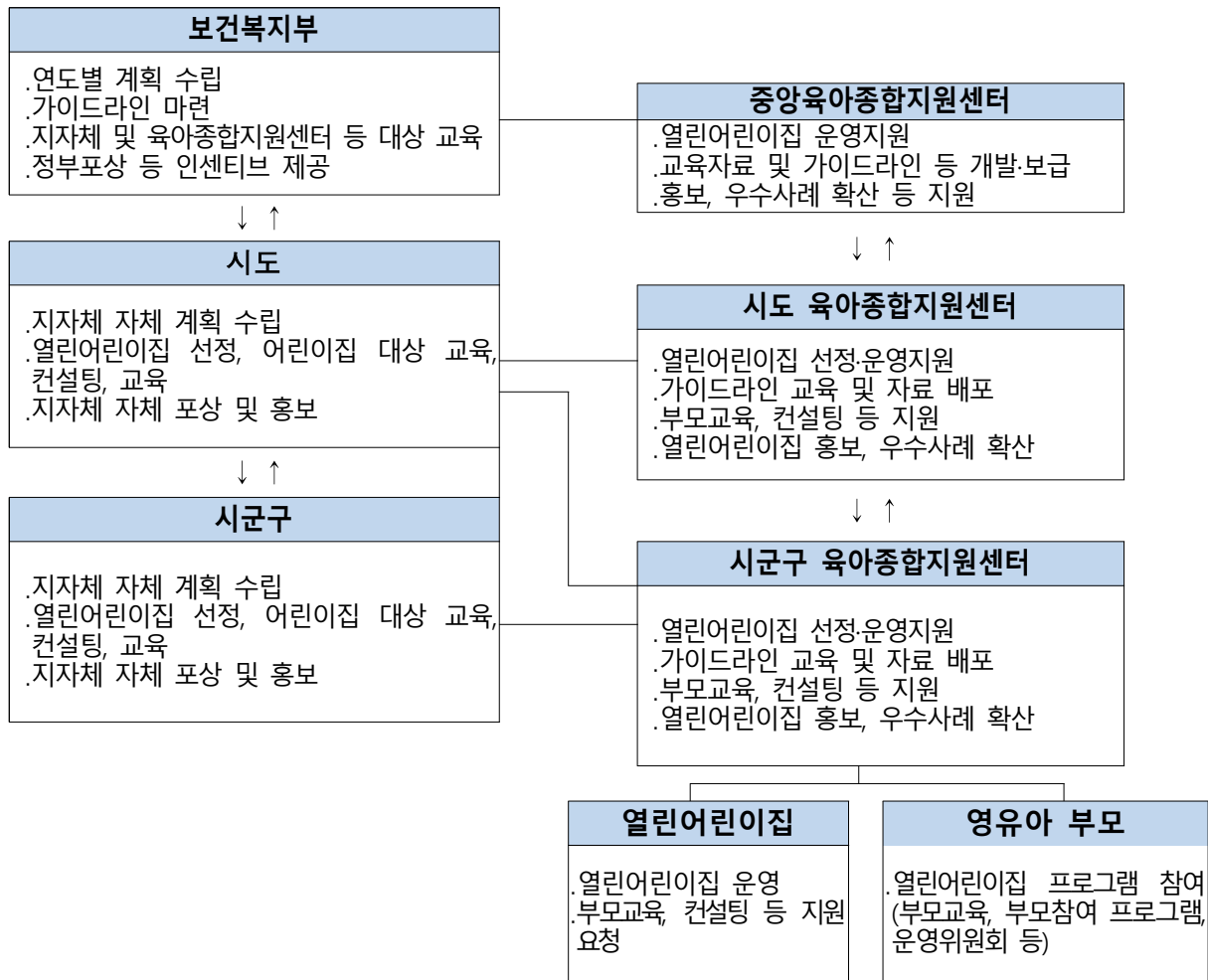
- 신규(재선정)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 이상) 2. 참여성(30점 이상) 3. 지속가능성(5점 이상) 4. 다양성(3점 이상))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선정 항목	배점	비고
1. 개방성	30	
○ 공간 개방성	15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은 보육실 문의 약 30% 이상으로 설치하여 상시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15	
-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13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보육실 문에 투명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10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12)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3점 배점	(13)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10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11)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12)	
○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 정보 공개	5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5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 온라인 소통 창구	5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운영		
2. 참여성	40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4	
- 실시기록 충족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조합 총회(분기별 1회 이상)	4	
○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4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	4	
- 실시횟수만 충족 시	2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10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	10	
- 실시횟수만 충족 시	5	
○ 부모만족도 조사 : 연 1회	4	
- 실시기록 충족	4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10	
3. 지속가능성	10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 연 1회	6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분기별 1회 이상	4	
4. 다양성	5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연 2회 이상	2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15	
총 점	100	

③ 관리체계

- (보건복지부)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교육,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열린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등
 - (설명회) 지자체별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이상) 개최
 -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컨설팅·상담 지원 실시
 - (교육, 홍보)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설명회,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개발·제작,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컨설팅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체계 >



4 선정절차

- ☐ (선정공고) 지자체의 장(시·도, 시·군·구청장)은 선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 (선정심사)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
 - 선정위원회 구성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 외에 외부 위원을 50%이상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 확보 조치
 -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선정 시 불필요한 서류작성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필요

<어린이집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주의사항>

- ① 평정항목 중 개방성(공간개방성,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은 현지확인을 통해 실시하고 서류 및 사진자료 제출 금지
- ② 현지확인 항목 외에 지자체 별도로 정하여 현지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실적 평정기간은 2019.10 ~ 2020.9월(1년)까지를 기준으로 함
 *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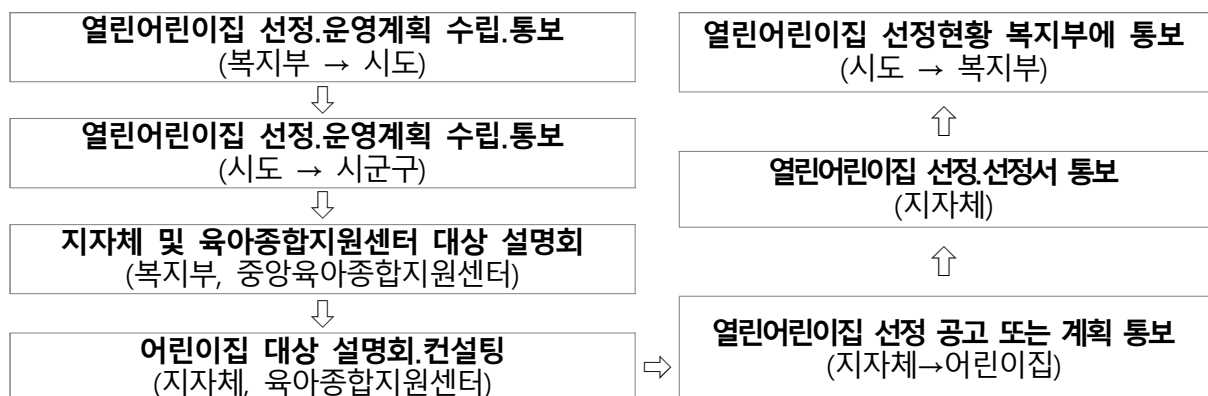
□ (선정) 열린어린이집 선정주기 표준화 관리

- 매년 지자체장이 신규·재선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선정서 배부, 선정유효기간은 당해년도 선정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지자체장은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선정서를 반드시 배부 (선정서 미배부시 미선정으로 함)

5 재선정

- 매년 8~10월에 지자체장이 유효기간이 도래한 열린어린이집에서 재선정을 희망 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함(신규 선정기준과 동일)
 * 재선정 기간이 8~9월일 경우, 평정기간 1년을 준용하여 평정할 것
- 선정기간은 신규선정 이후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이상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



6 선정취소

☐ (취소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취소사유)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취소 사유 추가 가능

- 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취소절차)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통보 실시

○ 시·도지사가 선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하고 시·도지사가 취소절차 진행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를 회수하여 폐기조치
- 선정취소일은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운영포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신청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 포기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선정권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통보

구분	선정기준	비고
1. 개방성	30점	
○ 공간 개방성	-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15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13점
	-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3점 배점	10점 (12점) (13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10점 (11점) (12점)
○ 부모 공용공간	- 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 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부모 공용공간을 1곳 이상 마련되어야 하며 기본설비(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을 현관 등에 설치 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함	5점
○ 정보공개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5점
○ 온라인 소통창구	-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실, SNS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5점
2. 참여성	40점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 연 1회 이상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실시기록 - 신입원아 90% 이상 부모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4점
○ 부모 개별상담	- 연 2회 이상 * 영유아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 단,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4점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총회	-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 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회의록, ③회의결과 안내 공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정기(임시)총회”	4점

구분	선정기준		비고
	실시횟수를 평가(분기별 1회 이상) ① 총회운영 관련 조합 정관, ② 총회 개최 안내 공지, ③ 총회회의록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부모교육	- 연 2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 횟수,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시 4점 부여	4점	
	- 연 2회 이상 * 실시횟수만 충족시 2점 부여	2점	
○ 부모참여 프로그램	- 분기별 1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 횟수,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시 10점 부여	10점	
	- 분기별 1회 이상 * 실시횟수만 충족시 5점 부여	5점	
○ 부모 만족도조사	- 연 1회 * 연간운영계획, 결과기록	4점	
○ 부모 어린이집 참관	- 연중 운영 * ①참관안내문 현장 게시(참관자격, 시기 및 방법 등), ②부모참관 상시운영(현장확인)을 모두 충족해야 함	10점	
3. 지속가능성		10점	
○ 부모참여 활동 수요조사	- 연 1회 * ①결과기록, ②실시횟수, ③수요조사 반영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6점	
○ 부모참여 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분기별 1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참여안내 및 결과안내), ③실시 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내문에는 미참여 부모의 활동 독려 포함	4점	
4. 다양성		5점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균형적 운영 여부 * 부모참여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시기, 대상, 내용, 장소 등)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일회성 행사 지양)	3점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연 2회 이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활동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미인정	2점	
5. 지자체기준		15점	
총점		100점	

* 열린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해 신규선정(재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 (20점 이상) 2. 참여성 (30점 이상) 3. 지속가능성 (5점 이상) 4. 다양성(3점 이상))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해야 함

*** 열린어린이집 모든 항목은 선정하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일관된 부분점수 허용 가능**

<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설명 >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 (개요)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방성 증진이 필요하며, 보육시간 중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여부로 판단함
- (평정기준)
 - [15점]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 [13점]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10점] 보육실 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12점
 -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전체 보육실 문에 투명창을 설치한 경우 13점
 - [10점]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12점
 -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11점
- ※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이 문의 약 30% 이상으로 설치하여 상시 개방되어 보육실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 (확인방법) **현장확인**
- (배점) **15점**

나. 부모 공용 공간

- (개요) 부모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함
- (평정기준)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1곳 이상 마련 여부
 - 부모 공용공간에는 기본설비(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 부모공용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 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함
- (확인방법) **현장확인**
- (배점) **5점**

다. 정보공개

- (개요)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수시(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월, 수시 공시)로 확인하고 수정하여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게 함
- (평정기준) 어린이집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하는지 여부(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공시범위 및 횟수(보육사업안내 p149 참고)에 맞게 정보공개
- (확인방법) 공시항목에 대한 **현장확인**
- (배점) **5점**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개요) 어린이집과 부모,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
- (평정기준)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코너,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 (확인방법) 온라인 소통자료 **현장확인**
- (배점) 5점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 (개요) 신입 원아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철학,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지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
- (평정기준) 연 1회 이상(학기 초 집단 오리엔테이션 외에 중간 입소원아 부모 수시 개별진행)
 - **신입원아 90% 이상 부모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 (확인방법) 실시기록(운영일지 등) 증빙자료
 - ★ **1회 이상 실적 현장확인**
- (배점) 4점

나. 부모 개별 상담

- (개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전반에 대해 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 교환 등 개별 상담 실시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영유아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 여부
 - * 단,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운영일지 또는 상담기록 등) 등 증빙자료
 - ★ **2회 이상 실적 현장확인**
- (배점) 4점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협동어린이집의 경우는 조합 총회)

- (개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함
-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 a.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 회의록, ③ 회의결과 안내 공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법적(영유아보육법 제25조) 준수사항이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p.137)' 운영위원 구성 등 기본내용을 준수해야 인정
 - b. 협동어린이집 조합 총회
 - ① 총회 운영규정(정관 등), ② 총회개최 안내 공지, ③ 총회 회의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방법)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총회) 조합 정관, 총회개최 안내 공지자료, 총회 회의록 등 증빙자료
 - ★ **4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라. 부모교육

- (개요)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① 연간운영계획, ② 실시횟수, ③ 실시기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단, ②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 등 증빙자료
- ★ 2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 (개요)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선정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예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부모참여수업 등)
-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 ① 연간운영계획, ② 실시횟수, ③ 실시기록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함
 - * 단, ②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5점 부여)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운영일지 등) 등 증빙자료
- ★ 4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10점

바. 부모만족도 조사

- (개요)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평정기준) 연 1회
 - 결과기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조사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결과기록(운영일지 등) 등 실시관련 증빙자료
- ★ 1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 (개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참관하는 것
- (평정기준) 상시 연중 운영
 - ① 참관안내문 현장 게시(참관자격, 시기 및 방법 등) ② 부모참관 상시운영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방법) 현장확인(상시운영 여부 면담확인, 참관안내문 현장 게시)
- (배점) 6점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 (개요) 부모참여 활동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참여여부 조사는 해당 안됨)
 - * 수요조사는 내용, 대상, 시간, 방법 등 부모참여활동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여야 함
(일부 항목만 조사 가능)
- (평정기준) 연 1회
 - ① 결과기록 ② 수요조사 반영여부* 모두 충족해야 함
 - * 수요조사 반영여부는 참여성('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등)에서 확인(내용, 시간, 대상 등)
- 반영여부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없이 '참여성'에서 제출한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
- (확인방법) 수요조사 결과기록, 수요조사 반영여부 등 증빙자료
- ★ 1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6점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개요)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미참여 부모의 참여 독려를 위한 부모참여활동 결과 등 공유
 - (평정기준) 분기별 1회
 -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참여안내 및 결과안내), ③ 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증빙자료
- ★ 4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개요) 부모참여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일회성 행사 지양)
- (평정기준) 부모참여활동의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 (확인방법) '2. 참여성'의 관련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
- (배점) 3점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개요) 지역사회의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일반적인 자원(도서관, 초등학교, 우체국, 노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트 등), 지역사회의 특별한 자원(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부모대상 또는 영유아·부모 함께 참여)
 -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
 - (확인방법) 안내문,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 2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2점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개요) 지자체가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적용
- (평정기준 및 확인방법) 지자체에서 정하여 적용

< 예시 >

- 부모 자율모임 구성 및 운영	- 인근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열린보육체험단 운영 등